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2.4.18.(월)〕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창원시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발의자 : 2022. 4. 8. 심영석 의원등 19명

❍ 회 부 일 자 : 2022. 4. 8.

❍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4.18.)상정, 질의 · 답변,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심영석 의원)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공청회에 출석하는 진술인에게 지급할 실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나. 공청회 참석 진술인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3조)

다. 실비지급 예외 규정(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공청회)
- 공무원 여비규정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다. 입법예고

- 기간 : 2022. 4. 9 ~ 4. 13
- 결과 : 제출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정정연)

❍ 본 조례안은 공청회에 참석하는 진술인에게 실비지급 기준을 별도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조례 목적, 실비지급, 지급기준 및 예외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 상위법과 기타 관계 법령 저촉사항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실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6. 질의·답변 요지 : 기재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